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030
----------	-------

발의연월일 : 2026. 5. 20.

발 의 자 : 김민전 · 조배숙 · 서천호
장동혁 · 곽규택 · 최수진
나경원 · 김장겸 · 박수영
강선영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난임 부부에 대한 난임 극복을 위한 지원 및 난소 또는 고환 절제 등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적인 불임이 예상되는 사람에 대한 생식세포 동결·보존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혼인 연령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난임 극복 지원 대상인 난임 부부나 생식세포 동결·보존 지원 대상인 난소 또는 고환 절제 등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적인 불임이 예상되는 사람에는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연령이 낮아 생식세포의 가임력이 높을 때에 생식세포를 동결·보존하였다가 향후 출산을 원할 때 이를 사용하려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따라서 향후 출산 의향이 있는 미혼 여성 등을 포함하여 폭넓게 생식세포 동결·보존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지방자치단체마다 생식세포 동결·보존을 위한 지원 여부와 내용이 달라 거주 지역에 따른 생식권의 불평등이 초래될 우려가 있음. 따라서 국가 차원의 지원을 통하여 보편적으로 생식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가임력 보전을 위한 생식세포 동결·보존의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하여 국민의 생식권 보장과 저출생 대응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 11조의7제1항).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모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7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임력 보전을 위한 생식세포의 동결·보존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혼인 여부에 따른 제한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1조의7(생식세포 동결·보존 등을 위한 지원) ① <u>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난소 또는 고환 절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치료로 인하여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적인 불임이 예상되어 생식세포의 동결·보존을 통한 가임력 보전이 필요한 사람의 생식세포 보존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u></p> <p>② (생 략)</p>	<p>제11조의7(생식세포 동결·보존 등을 위한 지원) ① <u>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임력 보전을 위한 생식세포의 동결·보존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혼인 여부에 따라 지원에 제한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u></p> <p>② (현행과 같음)</p>